

○ (고용노동부 업무메뉴얼)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

1. 사용자와의 협의, 교섭 업무

-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
 - 이동시간,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
-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, 보상 휴가제 실시, 재량근로제 실시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
-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
 - 협의,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, 실무교섭, 보충교섭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활동
- 교섭안 마련, 교섭결과 설명회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

2.고충처리 업무

- 근참법 및 사업장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정식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 공식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

3. 산업안전활동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(산안법 제19조)
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으로 회의안건준비, 안건검토 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
- 근로자대표의 동의,입회,의견 청취 :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대표로써 법률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 시간

4.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관련 업무

-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, 감사로서 기금 업무 수행활동

5.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,관리업무 범위

-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(노조법 제2장) : 노조규약에 정해진 정기총회, 대의원회,임원선거, 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,관리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
 - ※ 당해 사업장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(예:산별노조 경우 당해 사업장 조직된 지회,분회의 운영규정등)
- 그 밖의 생산성 향상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, 사용자의 위탁교육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,관리 업무
 -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,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
 -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 활동
 -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,관리 업무